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87
----------	------

발의연월일 : 2025. 1. 27.

발의의원 : 신달호 의원,

박주용 의원,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 생산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범위와 그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사용료 징수 범위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 범위)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료에 대한 징수 범위는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따른다.

제4조(사용료 감면) 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면 범위는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따른다.

제5조(사용료 징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징수한다. 그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하기 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하고, 그 사용료에 대한 징수 범위를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 「농어촌정비법(법률)」(2025.10.1. 타법개정·시행)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법률)」(2025.4.1. 일부개정, 2025.10.2. 시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9.23. 타법개정, 2025.10.2. 시행)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면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사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면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목적 외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한 지방세입 증가(안 제3조~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 주관부서인 도시정비과가 법 및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목적 외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도 징수하고 있음.
-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서 사용료 징수 범위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현재 달성군에는 해당 조례가 없음. 다만, 사용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입안에 신중해야 함. 따라서 현 수준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에 관한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본 조례안 입안의 목적임.
- 달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 허가 빈도가 적으므로 사용료에 대한 지방세입 규모가 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면서 동시에 선언적·권고적 성격이 강함. (안 제3조~제5조)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신 달 호 (☎ 2049)